

# 건설업 하도급거래 부당특약 급감... 공정성 대폭 개선

부당특약 설정 비율이 지난해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하는 등 건설업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세간의 '불편한' 시선과 달리, 건설 하도급시장에 긍정적인 거래분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2017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하도급 계약단계의 불공정행위가 감소하고 현금결제 비율이 증가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조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조, 건설, 용역업종에서 하도급거래가 많은 원사업자 5000개와 이들 거래하는 9만5000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술자료 제공요구(제3자에 대한 공개 여부) 및 경영 간섭 행위 등 새로 추가된 2개 항목을 포함, 서면 미교부와 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등 모두 28개 유형별 거래실태를 확인했다. 여기에 거래조건 항목으로 현금지급 비율 등 하도급대금 지급실태와 단가인하, 납품단가 조정실태도 점검하고 원사업자의 기술지원 여부 및 정책 만족도 조사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특약설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등으로 인한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대폭 개선됐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특약을 설정당했다

공정위, 10만개 사업장 조사 불공정 특약 설정 절반 이상 ↓ 대금 미지급 사례도 크게 줄어 현금지급 비율은 3년연속 증가

위반 혐의 원사업자 시정조치 일부업체 내년 직권조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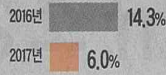
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2.2%로, 전년도 7.3%에서 3분의1 이상 줄었다.

특히 이 가운데 건설업종의 부당특약 설정 비율은 지난해 14.3%에서 올해 6.0%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2월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도입된 후,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한 집중 점검 효과와 더불어 업체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결합돼 긍정적인 하도급 계약분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비율도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54.1%였으나 올해는 71.8%로 17.7%P나 상승했다. 하도급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이 전년(11.8%) 대비 0.2%P 오른 12.0%를 기록했으나 계약단계에서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건설업종 부당특약 설정 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비율



현금지급 비율



불공정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대금미지급 행위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선금금 등을 미지급한 업체의 비율이 전년 대비 최소 0.3%P에서 최대 3%P씩 감소했다. 다만 선금금 지연이자 미지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0.2%→0.3%)했다.

하도급업체의 유동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현금지급 비율도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 2015년 51.7% 수준이었던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비율은 지난해 57.5%로 상승했고 올해는 62.3%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단가 인하를 경험한 하도급업

체 비율은 지난해(8.3%) 대비 소폭 증가해 9.8%를 나타냈으나 81.1%의 하도급업체가 단가 인하는 원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을 받아들인 비율은 99.3%에 달해, 전체적으로 원·하도급업체가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단가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 올해 처음 조사항목으로 포함된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청과 관련해서는, 하도급업체의 1.6%만 요청을 받은 경험 있다고 답했고 이 중 90.8%는 기술자료 제공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내달 발표 예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과 관련, 원사업자의 경영간

섭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속거래를 요구받았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2.7%로 나타났다.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7.4%로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금 미지급 및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단 1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원사업자 1589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해 우선 자진 시정을 통지하고, 자진 시정을 하지 않거나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엄중별로 분석해, 법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을 대상으로는 내년 초부터 별도의 직권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bsong@skbong.com](mailto:bsong@skbong.com)